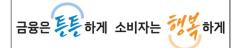


# 보도자료



보도	2024.9.23.(월) 조간	배포	2024.9.20.(금)		
담당부서	공시심사실 공시심사기획팀	책임자	실 장	조치형	(02-3145-8420)
		담당자	팀 장	이윤길	(02-3145-8422)

# 소액공모 투자에 대한 소비자 경보(주의) 발령

■ 소비자경보 2024- 31호							
등급		주의	경고	위험			
대상	금융소비자 일반						

#### 소비자경보 주요 내용

- 투자자의 "소액공모" 참여와 관련하여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함
  - 최근 소액공모현황 분석결과, 발행기업의 상당수가 재무실적이
     저조한 한계기업으로 파악됨
  - 소액공모 기업의 재무**실적 악화**시 **거래정지나 상장폐지**로 투자금 회수가 곤란할 수 있으므로 **투자자**의 **각별한 주의**가 **요구**됨

### 소액공모 참여시 소비자 유의사항

- ① 투자 전 발행기업 최근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을 확인하고 '적정의견'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② 사업보고서, 소액공모법인결산서류 등을 통해 발행기업의 재무상태 등에 이상이 없는지 지속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③ 소액공모를 통해 증권을 취득할 때는 일반공모에 비해 손해배상을 통한 구제가 어렵습니다.
- ④ 신문광고나 인쇄물에 기재된 발행기업 및 증권 관련 정보는 전자 공시시스템(DART)에 공시된 정보와 꼼꼼히 비교·확인하여야 합니다.

## I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

- □ 50인 이상에게 증권의 취득을 권유하여 자금조달('공모')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(금융감독원)에 증권신고서를 미리 제출하여 심사받아야 하나,
  - 소액공모\*에 해당할 경우, 금융당국의 사전 심사절차 없이 간단한 공시서류 제출만으로 신속한 자금조달이 가능함
    - \* 과거 1년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모금액 합계액의 10억원 미만인 경우
- □ 그런데, '21~'24.6월 중 소액공모현황을 분석한 결과, 발행기업 중 재무실적이 저조한 한계기업\*이 전체의 46%(115사 중 53사)를 차지하고 소액공모 이후 상장폐지된 기업도 7사 존재
  - \*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(=영업이익/이자비용) 1미만 + 설립이후 10년 경과
  - 소액공모 기업의 재무실적 악화시 거래정지나 상장폐지로 환금성이 제한되는 등 투자자 피해 발생가능성이 있어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함

#### - < 소액공모제도 개요 > -

- □ 자본시장법상 **기업 자금조달**은 **일반공모, 소액공모, 사모** 등으로 **구분** 되며, **공모**\* 발행시 기업은 **모집 전** 및 **이후 기업정보** 등을 **공시** 
  - \* 50인 이상 투자자 대상으로 청약권유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
  - **일반공모**는 증권신고서 제출 후 금융감독원의 **사전심사**를 거쳐 증권 신고서 **효력이 발생**된 이후 **매수 청약**에 대한 **승낙이 가능**하나,
  - **소액공모**는 **증권신고서** 대신 **소액공모공시서류** 등의 공시서류 **제출** 만으로 신속한 **자금조달**이 **가능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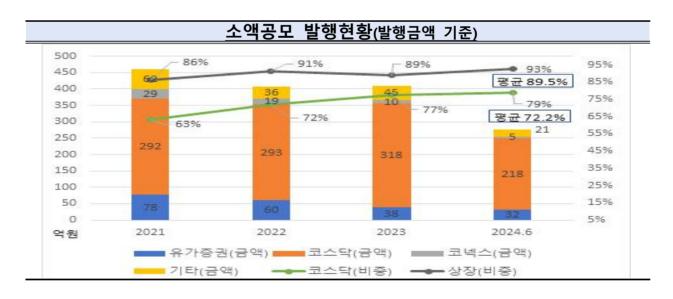
#### 소액공모시 공시서류

공시서류	공시시점	제공 정보		
① 소액공모공시서류	공모 3일전	<ul><li>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</li><li>발행인에 관한 사항 등</li></ul>		
② 소액공모감사보고*	공포 3월선	<ul> <li>직전연도 감사보고서 (반기경과시 반기검토보고서 포함)</li> </ul>		
③ 소액공모실적보고서	공모 종료 후	▪ 모집·매출 실적		
④ 소액공모법인결산서류*	매년 결산+90일	• 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 등 (회계감사 받은 경우 감사보고서 포함)		

\*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면제

### Ⅱ 소액공모 현황

- ※ '21~'24.6월 중 소액공모를 통한 자금조달 내역을 분석(구주 매출, 출자전환 등 제외)
- ① (조달규모) '21~'24.6월 중 소액공모를 통한 조달금액\*은 연평균 403억원으로 일반공모(평균 57.6조, 금융채, ABS 제외) 대비 0.07% 수준
   \* ('21년) 463억원 → ('22년) 418억원 → ('23년) 405억원 → ('24.6월) 270억원
- ② (발행기업) 총 조달금액 중 상장법인의 비중은 89.5%\*로 주로 상장법인이 소액공모를 활용 중이나, 발행기업의 재무실적은 대체로 저조
  - \* 상장법인 중 코스닥 비중이 높은 편(유가: 13.3% 코스닥: 72.2% 코넥스: 4.0%)
  - '21~24.6월 중 소액공모를 실시한 **상장법인 115사** 중 **53사(46.1%)**가 **한계기업**\*에 해당하며, **43사(37.4%)**는 **3년 연속 영업손실** 발생 \*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(=영업이익/이자비용) 1미만 + 설립이후 10년 경과
  - 또한, 115사 중 '21~23년 중 부분자본잠식을 경험한 기업은 45사 (39.1%),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기업은 11사(9.6%)



- ③ (상장폐지 등) 소액공모를 실시한 상장사 115사 중 7사(6.1%)는 '24.6월말 상장폐지\* 상태이며, 38사(33.0%)는 '21~'24.6월 중 관리종목 지정이력 존재
  - \* 상장폐지사유 : (감사의견 거절) 4사, (기업 계속성 및 투명성 부족 등) 3사

# Ⅲ 소비자 유의사항

- ① 투자 전 발행기업 최근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을 확인하고 '적정의견'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소액공모 발행기업 중 회계처리기준 위반,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 등의 사유로 감사의견\*이 '비적정'인 기업의 비중(9.6%)은 전체 상장법인\*\* 대비 높은 것으로 분석됨
  - \* 재무제표 감사의견은 감사범위 제한 여부, 회계처리 기준 위배 여부, 계속기업 존속 가능성 등에 따라 적정, 한정, 부적정, 의견거절로 구분
  - \*\* 전체 상장법인 중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 비중 : 2.5%('23회계연도 기준)
- 이에 따라 소액공모 참여시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발행기업의 최근 사업보고서 및 소액공모감사보고를 통해 감사의견을 확인 하고 '적정의견'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
- ② 사업보고서, 소액공모법인결산서류 등을 통해 발행기업의 재무상태 등에 이상이 없는지 지속 확인하여야 합니다.
  - 최근 소액공모현황 분석결과, 발행기업의 상당수가 재무실적이
     저조한 한계기업으로 파악됨
  - 이에 따라 발행기업의 재무실적이 악화될 경우 관리종목 지정,
     상장폐지로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
  - 소액공모에 참여한 투자자는 발행기업의 **사업보고서, 소액공모법인 결산서류** 등을 통해 **발행기업**의 **재무상태를 지속 확인**하여야 함

- ③ 소액공모를 통해 증권을 취득할 때는 일반공모에 비해 손해배상을 통한 구제가 어렵습니다.
  - **소액공모**는 일반공모와 달리 **자본시장법**상 발행인 등의 **손해** 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음
  - 이에 따라 소액공모 공시서류상 중요사항 미기재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, 발행인의 고의·과실여부 등을 투자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손해배상을 통한 구제가 일반공모\*에 비해 어려움
    - \*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청구는 민법과 달리 발행기업 등이 스스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함
- ④ 신문광고나 인쇄물에 기재된 발행기업 및 증권 관련 정보는 전자공시 시스템(DART)에 공시된 정보와 꼼꼼히 비교·확인하여야 합니다.
  - 신문광고 등 **청약권유 인쇄물**에는 정보가 **요약 기재**되는 경우가 많아 **중요**한 **투자위험** 등이 **누락**되었을 수 있으므로,
  -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(dart.fss.or.kr)에 공시된 정보를 통해 발행기업 및 증권 관련 정보를 꼼꼼히 비교·확인하여야 함

# 증권 모집·매출시 공시의무

- ◆ 신문광고, 문자 및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청약을 권유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공시의무가 존재
- □ 50인\* 이상을 대상으로 신규발행 증권 또는 기발행 증권의 취득을 권유할 경우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
  - \* 전문가·연고자는 제외되며 과거 6개월 이내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해 모집· 매출에 의하지 않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
  - 실제 청약자가 아니라 **청약권유를 받은 자**를 기준으로 하므로 **인터넷** 등 **불특정다수**가 **접근 가능**한 매체를 사용할 경우 **공시의무가 발생**
  - ◈ 모집·매출가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증권신고서를, 10억원 미만일 경우 소액공모공시서류 등을 제출
- □ 당해 모집·매출가액과 과거 1년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모집 ·매출한 가액의 합계액이 각각 10억원 이상일 경우 증권신고서를, 10억워 미만일 경우 소액공모공시서류 등을 제출
  - **증권신고서 제출대상**(모집·매출가액 10억원 이상)인 경우 **청약을 권유**할 때에는 **투자설명서를 교부**하여 **투자자**가 증권 및 발행인에 관한 내용을 **충분히 파악**한 후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
  - **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대상**인 경우 발행인의 재무상태, 영업실적 및 공모의 개요 등의 **공시의무**\*를 이행
    - \* ① 소액공모 개시 3일 전에 소액공모공시서류 및 감사보고서 제출
      - ② 은행 및 투자매매·중개업자 등과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
      - ③ 소액공모 종료 후 지체없이 소액공모실적보고서 제출
      - ④ 매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결산서류 제출
  - ※ 상세한 공시제도 설명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게시 자료를 참고 :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→「업무자료」→「공시업무」→「기업공시제도 일반」 또는「공시유의사항」